# 고위험시설핵심방역수칙안내(2차)

## 1 적용대상



-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 등 4개 시설\*
  - \*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고위험시설 4개 추가

시설 유형	대상 시설(4개 시설)	
사업장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방문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업체), 유통물류센터(온라인 유통기업)	
교육시설	<b>대형학원</b> (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)	
음식점	<b>뷔페</b> (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) * 출장뷔페,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	

## 2 준수사항



- (사업주·종사자) 운영자제 권고, 운영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
- (이용자)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

## 3 핵심 방역수칙

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(방문 판매업, 판매업) 후원방문 판매업)	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</li> <li>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li>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/li> <li>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li>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</li> <li>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</li> </ul>	<ul> <li>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마스크 착용</li> <li>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유통물류 센터	(사업주 수칙) 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 - 전자출입명부 설치  - 수기명부 비치(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 ■ 사업주 마스크 착용,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■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  ■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  ■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	(근로자 수칙) 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 ■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■ 마스크 착용  ■ 근로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대형학원 (300인 이상)	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(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)</li> <li>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li>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/li> <li>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수업 전/후 시설 소독및 환기(대장작성)</li> <li>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* 강의실·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</li> <li>공용차량 운행 시, 운전자 마스크 착용, 차량 운행 전후 소독(대장 작성)</li> </ul>	<ul> <li>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마스크 착용</li> <li>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뷔페	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</li> <li>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li>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/li> <li>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* 필요시 비닐장갑함께 비치</li> <li>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안내*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</li> </ul>	<ul> <li>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마스크 착용(입장,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)</li> <li>공용 집게 · 접시 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## 4 적용기간



• 2020년 6월 23일(화) 18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#### 5 벌칙부과



-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**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**(300만원 이하) 부과 및 **집합금지 가능** 
  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